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1-131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2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

1. 기술개발자

- 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하이드로코리아(양난경)
 ② (주)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(신완수)
 ③ (주)대우건설(김형)

나. 전화번호 : ① 070-7545-7080 ② 02-6211-7886 ③ 02-2288-3114

2. 지정번호 : 신기술 제696호

3. 명칭 : 강봉의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

4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교량 / 교량 설계 및 구조

<기술의 요지>

이 신기술은 교대(벽체)에 매립 시공된 강봉이 연직 관통하도록 제작된 강재거더를 교대에 거치한 뒤, 연직방향 강봉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긴장 및 정착하여 강재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현장에서 도입하여 슬래브 콘크리트 합성전에 강재거더를 단순보에서 연속보 형태로 구조계를 변경하여 발생 부재력을 제어하는 강합성 라멘교 제작 기술이다.

<범위>

강봉과 강재받침으로 구성되는 연직방향 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강재거더 단부에 프리스트레스를 현장에서 도입하여 구조계를 연속보 형태로 변경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

5. 보호기간 : 2013.06.07. ~ 2021.06.06.(8년)

6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1-132호

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

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42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상호 : (주)케이원청천2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2. 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코래이트타워
3. 취소사유 :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42조제1항제3호, 제4호, 제6호
4. 인가취소일 : 2021년 1월 25일

●해양수산부공고제2021-230호

「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」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일

해양수산부장관

「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」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안 제27조에 따른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보 열람 방법(안 제2조)

- 해양수산부 및 기초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령자 성명 등을 입력하여 조회·열람토록 함

나.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(안 제3조)

-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, 생년월일과 열람목적을 입력하도록 함

다. 열람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(안 제4조)

- 정보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이의신청 사유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